

보내는 사람:

받는 사람:

귀하

주소:

[ ]고용보험 [ ]산재보험  
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[ ]승인 [ ]불승인 통지서

문서번호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원수급인                 | 상호·법인명           | 대표자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본사 소재지           | 보험사무대행기관명 |
|                      | 원수급 공사명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원수급공사 관리(사업개시)번호 |           |
| 사업장                  | 상호·법인명           | 대표자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본사 소재지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하수급 공사명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공사현장 소재지         |           |
|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(사업 개시)번호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하수급인보험 성립일(사업 개시일)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직인

## 고용·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

## 1. 개산보험료

- 해당 연도(또는 공사기간)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(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)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-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%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(다만,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).

## 2. 확정보험료

- 1년간(또는 공사기간)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,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(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)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(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).

## 가입 및 신고·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

## 1.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

-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## 2.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

-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## 3.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

-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%를 징수하게 됩니다.
-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%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.

## 4.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

- 고용·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.
-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%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.

##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·상실 신고

- ※ 근로자 채용(이직) 시 채용(이직)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(상실)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"근로내용 확인신고서"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※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, 성명, 사업의 명칭, 소재지,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,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기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(지사)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※ 산재보험 적용사업(장)은 「임금채권보장법」, 「석면피해구제법」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.